

#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(SEORO)지원사업 수정 재공고

## □ 공모요강 변경사항

-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(SEORO)지원사업 공모요강 중 제외 대상에서 관련법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바」 원문 수록

### ○ (변경내용)

- 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제외·신청불가 대상 수정

#### <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제외·신청불가 대상(공통)>

- (변경전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- (변경후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- ② 필수제출서류 붙임3. 4번 항목 수정

#### <필수제출서류 붙임3. (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)>

- (변경전)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.
- (변경후)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바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.

## □ 적용기준일

- 모든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(22.1.27.) 기준으로 함